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14:00 ~ 17:40 (3시간 40분)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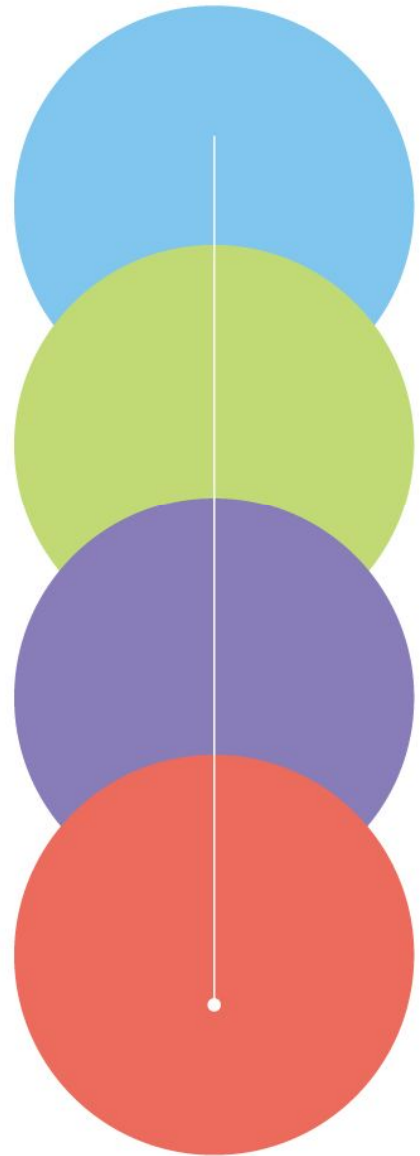
좌장 :

- 송석윤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발표 :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김관기 변호사(김박공동법률사무소)
-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 :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최유경 박사(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14:00~17:40 (3시간 40분)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행사시간	행 사 일 정	비 고
14:00~14:10 (10m)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오수근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축 사: 이상민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명기 국장 (법전문협의회)
14:10~16:10 (2h)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김관기 변호사 (김박공동법률사무소) •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유경 박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송석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10~16:30 (20m)	[중간 휴식]	
16:30~17:30 (1h)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민정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 공태운 차장 (한국경제신문) • 김두얼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 김태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 최명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7:30~17:40 (10m)	[청중 질의응답]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돌아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7년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9
2.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 김관기 변호사 (김박공동법률사무소)21
3.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최유경 박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33

토론

- 강민정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63
- 공태운 차장 (한국경제신문)67
- 김두얼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부)73
- 김태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79
-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97
- 최명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10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수확의 아름다운 계절에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로 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법전원이 도입됨으로써 종래 소수가 독점하던 사법권력이 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분산되었고, 타전공 학부 교육이 정상화 되었으며, 출신대학이 다양화되는 놀랍고도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통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왔으며, 교육을 통해 그동안 6,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어 법무법인, 법원, 검찰을 비롯해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익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설립되어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법전원을 통해 이룬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률가 양성을 위해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법전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가 발제를 해 주십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직접 주장하고 추진하신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께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 7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판사와 법전원 교수를 역임하신 김관기변호사께서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논해주시고, 법사회학자인 최유경박사님께서 특별전형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입 장벽 완화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 토론자로는 변호사시험 관리기관인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강민정검사님, 법전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한국경제신문 공태운 차장님,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명지대학교의 김두얼교수님,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환 변호사님, 법원행정처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님,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이신 백석대학교 최명민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귀한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전협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전원장님과 성원해 주신 전국 25개 법원장 원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사무국에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오 수 근

[1] 주제발표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아본
로스쿨 시대 7년



(발표)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 돌아본 로스쿨 시대 7년

박 근 용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I. 들어가며

로스쿨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공론의 장에 오른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1995년 2월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가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추위는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것만 결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에 관해서는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는데 그쳤다.

로스쿨 관련 논의는 1998년 7월에 발족한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 공동체위원회(새교위)’에서 재개되었다. 새교위 산하에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는 법학대학원의 설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학사후 법학교육’의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이듬해인 1999년 5월에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는 2000년 5월 ‘로스쿨 도입’을 배척하고 사법연수원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한국사법대학원(가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로스쿨 도입은 법학교육 개혁 또는 법률가양성 제도 개혁 논의기구에서 번번히 다루어졌지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3년 10월에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설치된 노무현 정부때 전환기를 맞았다. 사개위가 2004년 12월에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비록 사개위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 로스쿨 도입 반대 주장을 펼 위원들이 있었지만, 사개위가 설치된 대법원의 입장이 도입 찬성 또는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사개위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약

2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더 걸렸고,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총입학 정원 결정이나 변호사시험제도 설계를 두고서는 2009년까지도 논쟁이 이어졌다.

2004년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 여부를 논의하던 중인 2004년 하반기부터, 2007년 7월에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10월에 교육부가 총입학정원을 정할 때, 그리고 2009년 3월에 25개 로스쿨이 개교하고, 2009년 4월에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까지, 로스쿨 도입 및 순수자격시험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로스쿨이 개교한 후 지난 7년은 나름대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낸 기간이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로스쿨-변호사시험체제로 넘어오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던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이 사법시험 폐지를 눈앞에 둔 지금 맹렬하고, ‘개천의 용’이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기대하며 과거 시절에 대한 향수를 꺼내는 이들의 이야기가 주요 언론에서도 여과없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입학생 선발 또는 로스쿨 졸업 후 취업사례에서 불거져 나오는 ‘음서제’ 논란도 간간히 불거졌다.

근래 들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움트고 있는 반목과 갈등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반면 매년 2000여명의 시민이 25개 로스쿨에서 법률가로서 배워야 할 기본 자질과 지식, 법조윤리를 비롯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2012년부터 4차례의 변호사시험을 거쳐 사회에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변화를 실감한 기간이었다. 특히나 로스쿨 제도가 아니었으면 법률가의 길에 도전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로스쿨 도입 운동에 함께 했던 이로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 7년을 돌아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점들을 꼽아보고자 한다.

II. 로스쿨 제도 도입 7년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

1.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이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목적은

여러 가지였고, 그 목적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공통적으로 삼은 것은,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과정에 의한 양성’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즉 ‘시험을 통한 선발 후 국가주도형 교육’ 법률가 배출 시스템을 ‘복수의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후 자격부여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는 사법시험 통과만으로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가 배출에 부합하지 못하고,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와 반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선발한 집단을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하는 사법연수원 제도에 대한 반성도 포함된 것이었다.

출제자가 예정한 정답을 많이 맞춘 사람인지 아닌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많이 암기했는가를 법률가 자격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전문직인만큼 꼭 필수적인 것은 알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키우는 것은 뒷전이고, 법률지식의 암기량을 상대평가방식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복수의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후 자격 부여’ 방식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25개 로스쿨에서 매년 2000명씩 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난 7년간 약 1만 4천명의 시민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이들에게 변호사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험을 거쳐 법률가(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운영하기 시작했고, 또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을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과거의 방식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2. 법률가 사회의 다양화와 균형이 촉진되고 있다.

우리 법률가 사회는 폐쇄적인 집단, 연고주의가 매우 강한 곳이었다. 물론 연간 변호사 1000명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그 이전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으나, 몇몇 대학출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법연수원 기수를 통해 형성된 집단성은 여전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는 법률가 사회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고,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더

많이 법률가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10~2015 학년도까지 6년동안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59명)와 차상위 계층(323명)은 모두 582명이고, 연 평균 97명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장애인이 99명이고 그 외 특별전형 입학자(소년소녀가장이나 새터민, 농어촌 출신,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경우가 97명이다.

2015년 올해까지 치러진 네 차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특별전형 입학생이 315명이라고 하는데(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제4회 75명), 특별전형 대상자인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계층에서 연 평균 78.7명의 변호사가 배출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특별전형제도와 경제적 환경에 따른 장학제도가 정책적 결정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법시험보다 로스쿨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법률가 사회에 사회경제적 지위면에서 약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법률가 사회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으로 법률가 사회에 진입하는 이들의 출신지역 또는 출신대학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로스쿨이 25개로 다양하고, 이 로스쿨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02년~2014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대학은 전국 74개 대학이지만, 2009년~2013년 로스쿨 입학자 배출 대학은 전국 108개 대학으로 34개로 늘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2011년 10년간 연평균 사법시험 합격자 5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18개였으나, 2009년~2013년 5년간 연평균 로스쿨 입학생 5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총 34개 대학으로 1.9배 증가하였다.

이런 통계는 로스쿨 체제에서 변호사자격 취득 기회에 접근한 이들의 출신대학 다양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2011년 10년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5명 이상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은 4개교(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에 불과했던 데 대해, 2009~2013년 5년동안 연평균 로스쿨 입학생 5명 이상을 배출한 비수도권 대학(KAIST와 포항공대 제외)의 수는 11개교(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동아대, 한동대, 영남대, 충북대, 원광대, 강원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2~2011년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9,522명 중 903명(9.4%)이 42개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이었지만, 2009~2013년 5년간 로스쿨 입학생 10,393명 중 1,436명(13.8%)이 68개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이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법률가 사회에 진

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런 변화를 더 촉진할 것이다. 2014년 1월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반드시 해당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¹⁾²⁾

다음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에서 일부 대학 출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도 바뀌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중 지방대학 출신 비중이 17.4%이고, 이른바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 출신 비중이 55.5%이라고 한다. 이는 2008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법연수원 39기 이전 변호사(1기~39기)중 지방대학 출신 비중은 7.3%이고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비중이 77.2%라는 이재협 교수 등의 조사(2015)결과와 비교해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변호사가 되려는 이들의 전공분야도 다양해지고, 대학졸업 후 전문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경력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들 법률가들이 자격취득 이후 수행할 법률서비스 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자 306명중 비법학 계열은 58명(18.95%)에 불과했지만,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 중 비법학사는 725명(46.77%)에 달했고, 201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2,084명중 공학계열이 101명, 사범대 계열이 42명, 약학과 의학계열도 20명에 달하고 예체능 계열도 7명 있는 등 비법학 계열이 1,167명(56%)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2009~2013년 로스쿨 전체 입학생 중 비법학사 비중과 제1회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비중을 2009년 이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사 비중과 비교(아래 표들 참고)해도 변화를 알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별표 나.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은 해당 권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20% 이상, 강원과과 제주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해당 권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10% 이상 모집해야 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입학생 수	1,998명	2,000명	2,092명	2,092명	2,099명	2,056.2명
비법학사 인원 수	1,311명	1,247명	1,064명	961명	937명	1,104명
비법학사 비중	65.6%	62.4%	50.9%	45.9%	44.6%	53.7%

	합격자 수	비법학사 수	비법학사 비중
제1회(2012) 변호사시험	1,451명	899명	61.96%
제2회(2013) 변호사시험	1,538명	917명	59.62%
평균	1,494.5명	908명	60.75%

합격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년 평균
합격자 수	1,009명	999명	994명	1,011명	1,005명	1,003.6명
비법학사 인원 수	261명	277명	234명	221명	192명	237명
비법학사 비중	25.87%	27.73%	23.54%	21.86%	19.10%	23.61%

한편 의사, 약사, 변리사, 교사, 공무원, 경찰,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이나 전문분야 경험을 가진 이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아래 표 참고).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이런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사회경험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법시험 도전의 부담에 비해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시험 도전의 부담이 낮은만큼, 앞으로도 사회경험자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진입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법전문원명	2010년 입학생	2013년 입학생
경북대	의료 7명, 교육 6명, 공무원(군인) 2명, 대기업 19명 등	금융/증권 2명, 교육 3명, 공무원 5명, 군인 1명 등
고려대	의/약사 2명, 공무원/직업군인 6명, 회계사/금융기관 5명, 회사원/언론인 9명, 변리사/통역사 2명 등	의/약사 1명, 공무원/직업군인 2명, 회계사/금융기관 5명, 회사원/언론인 2명, 변리사/통역사 1명

3) 이 수치는 다음 자료에서 추출한 것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문 협의회)가 발표한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발표'(2010.3.2. 발표), '201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발표'(2011.3.22. 발표), '201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발표'(2012.3.15. 발표), '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발표'(2013.3.14. 발표).

법전원명	2010년 입학생	2013년 입학생
동아대	의사 1명, 수의사 1명, 경영컨설턴트 1명, 미국공인회계사 1명, 회계사 1명, 언론인권센터상담실장 1명, 언론인 2명, 공무원 4명 등	장교 1명, 경찰간부 1명, 법률사무소 2명, 은행원 1명, 세무사 1명, 미국공인회계사 1명, 펀드투자상담사 1명, 소비자상담사 1급 1명 등
부산대	해기사 1명, 간호사 1명, 노무사 2명, 약사 1명, 의사 4명, 감정평가사 1명, 방송직 2명, 기자 2명, 관리사(상담사) 3명, 은행(금융)직원 7명, 공무원 3명 등	공무원 1명, 교사 2명, 군인 3명, 노무사 1명, 방송직 2명, 항해사 1명, 회사원 11명 등
성균관대	감정평가사 1명, 회계사 1명, 관세사 1명, 변리사 1명, 손해사정사 1명, 은행원 2명, 기자 2명, 회사원 38명 등	의사 2명, 수의사 1명, 펀드투자상담사 2명, 국제무역사 1명 등
전남대	소방공무원 1명, 정당활동 6명, 법무팀 2명, 노무사 1명, 군인 5명, 약사 1명, NGO 3명, 언론인 6명, 관세사 1명, 아동복지교사 1명, 회사원 19명 등	건축기사 1명, 기자 1명, 법무팀 1명, 일반공무원 4명, 회사원 14명 등
충남대	공무원 2명, 교사 1명, 군인 2명, 노무사 1명, 변리사 2명, 약사 3명, 언론인 2명, 프로그래머 1명, 한의사 1명 등	공무원 1명, 교사 1명, 군인 1명, 금융업 3명, 특허명세서 1명, 회사원 17명 등

3. ‘교육을 통한 양성’ 시스템과 모순되는 ‘정원제 선발시험제’가 유지되고 있다.

연간 변호사 수를 늘리게 된 것은 로스쿨 도입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 100명도 안 뽑던 시절에서 300명으로 늘렸던 때가 있었고, 300명에서 몇 년간의 단계를 거쳐 1,000명대로 늘린 때가 있었다. 그 때마다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수의 증대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 수준의 하락, 경쟁과다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이 근거였다. 이런 논리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도 반복되었는데, 로스쿨이 운영되는 현재까지도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법무부와 변호사단체들의 주장대로, 총입학정원을 통해 법률가자격 취득에 도전할 이들의 숫자를 한 번 통제했음에도, 변호사 배출 ‘숫자’를 한 번 통제하기 위해 로스쿨에서 교육과정을 거친 이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제로 운영하

고 있다. 총입학정원(2000명)의 75%에 해당하는 1,500명 내외의 인원만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폐지하기로 한 ‘정원제 선발시험’ 시스템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양성과정을 거친 이들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검증 또는 평가)한 후 문제가 없다면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대신, 양성과정을 거친 이들을 성적순으로 가려내는 기존의 시스템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모순되는 두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신규 법률가 인원의 급증의 충격이 우려되어서, 또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위해서, 또는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 자격기준인지 합의한 기준이 없어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모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7년, 변호사시험 실시 4년째에 들어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법률가를 키우기 위해 교육의 폭(다양성)과 수준(이론이든 실무분야든)을 강화하고, 법률지식에 국한되지 않는 소양과 자질을 갖추도록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취지의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매우 더디게 하고 위협하고 있다. 모순적인 두 시스템이 공존해 로스쿨 제도를 위협하는 상황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을 모두 거쳐 졸업하게 된 이들이 치를 시험은 ‘순수자격시험’ 즉 상대평가에 따른 순위경쟁 시험이 아니라 자격여부가 있는지만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는 시험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부실한지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은 로스쿨 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해결해야지, 변호사시험을 상대평가 시험으로 운영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

4. 로스쿨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 변호사시험 합격자 임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시험성적’같은 과거 같은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래 몇 년 사이에는 로스쿨 입학생 선발과정의 불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력 인사들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들이 거론되며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이는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런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폐기나 재고로 이어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대학 학부 입학생 모집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대학을 없앨 수 없고, 공기업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공기업을 없앨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학생 모집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은 중요하다. 다만 객관식 시험점수, 즉 법학적성시험 점수, 대학 학부 성적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률가로서의 잠재성이나 가치관, 인성, 경험과 경력 등도 로스쿨 입학생 모집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로스쿨 체제 후 법관(또는 재판연구원) 임용과 신규 검사임용과정에 대한 불공정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 논란은, 누구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법시험 성적 또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수치화된 기준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성숙되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임용기준마련이나 임용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당연한 것이고, 임용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최근 변호사시험 성적이 임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은 순위를 매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만큼 이를 법관(재판연구원) 임용과 검사임용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은 옳지 않다.

Ⅲ. 나오며

로스쿨 제도 도입 7년은, 첫째,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기간이었으며, 둘째, 로스쿨 제도의 취지(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와 모순되는 과거 방식(정원제 선발시험방식의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제도 취지달성을 위협하며 불편하게 동거하고 있는 기간이었으며, 셋째,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바뀌어야 했던 법관(재판연구원 포함) 및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시키고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와 모순되는 변호사시험의 정원제 선발시험 성격을 빨리 없애고, 로스쿨 제도 시행과 함께 바뀔 수 밖에 없는 법관 및 검사임용 등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발표) 김관기 변호사 (김박공동법률사무소)

분권화, 다양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본 사법시험 존치

김 관 기 변호사 (김박공동법률사무소)

I. 문제의 제기

대중의 요구는 언제나 법적 조언과 대리를 제공하는 직업, 직업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지극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법률지식이 충분함을 증명하고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변호사라는 정통 법조인에 추가하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와 같은 전문적 대리인을 만든 것은 변호사가 너무 적었다고 대중이 확신하였음을 반영한다. 이들은 법정변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조언 및 실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행사하는 ‘전문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 변호사들은 특허, 세무, 노무 실무로의 진입을 차단 당하고 있다. 법무사는 법정 출입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변호사이다. 최근 법률광고의 태반을 차지하는 파산, 회생 영역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상담인 자격증을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민과 같은 분야는 아직 법률적 대리의 영역이라는 인식도 생긴 것 같지 않다. 시끄러운 변호사의 ‘직역확대’ 주장은 결코 실천된 바 없는 것이다. 오래 전에 사법시험의 연간 합격인원을 1,000명으로 늘린 것도 변호사의 고유직무 즉 사법절차에서의 대리 및 변론에 대한 대중의 수요에 응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로스쿨은 이와 같이 대중이 요구하는 법조인 대량 배출이라는 실천적 필요성을 충족함에 있어서, 지극히 재능 있는 자는 2년, 3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전업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을 갖추고 주관적인 의지를 관철하는 명석한 서생을 그저 ‘고르던’ 제도를 포기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부 수준 대학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법조인을 ‘기르는’ 과정을 거쳐 여러 경로로 진출하게 하는 제도로 전환한 것이라고 하겠다. 시험으로 강제할 수 없는 기초적 실무능력 전수를 국가가 전담하던 것을 포기하고 전국에 산재한 학교로 이관함으로써 분권화하고, 여기

에 사회적 계급적 다양성을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적 지배구조에 기여하는 것을 의도하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서는 이점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십년 내려 온 전통의 급격한 전환이 쉽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방식에 의한 사법시험의 통과 및 그 후의 국가기관에서의 연수 제도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시험을 추구한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한 것을 넘어서,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법시험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하여는, 수년 동안의 연구와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을 거친 견해의 조정을 거친 대립을 거쳐 정치적으로 성립한 결단을 뒤집음으로써 발생할 정치적인 혼란과 예산상의 부담을 넘어서는 이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동기라고 필자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법권력의 분산, 출구와 입구의 다양성 및 그와 병행하는 대중의 대중에 대한 봉사라는 민주적 지배구조를 로스쿨이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 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사법시험의 존치인 것인 지를 따져 볼 일이다. 필자는 회의적이다.

II. 분권화

제주, 강원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로스쿨이 지역적 분권을 강제로라도 신장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크지 않다. 물론 지방의 로스쿨 조차 합격생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학교나 지역에 대한 연관은 대학 학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 박사, 교수를 어느 대학에서 한다고 하여도, 경영대학원, 최고위자과정, 심지어는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단기 코스에 다니더라도 대학에 대한 소속감은 충분할 수 있다. 여기에, 타 대학 출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분권화는 이전보다는 더 달성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300명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략 반 이상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검사, 판사로 임용 받는 사람 중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절에 비하면 현저한 개선이다. 이들이 암묵적 연대를 통하여 무엇인가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할 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변호사회에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전관예우 논란의 근원 중 하나 아니던가. 1,000명 씩 배출하게 된 이후로 그러한 독점적 경향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겠지만 같은 곳에서 배웠다는 연대의식은 사라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법조인 배출기관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니 분권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특정 명문 대학 출신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줄이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학생의 등록금이 면제되고 봉급까지 받는 압도적인 명문 로스쿨을 하나 더 창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스쿨을 도입한 목적에 반하고, 오히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친하다. 사법시험 존치는 학교별, 지역별 분권화를 추구하는 결단에 정면으로 반한다.

Ⅲ. 다양성

학부 시절에 각종 다양한 전공의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로스쿨로 진학하여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필자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사법시험을 1,000명 씩 뽑기 시작하면 서부터는 법과대학 학생이나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 대부분이, 심하게는 이공계 학생까지 사법시험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각종 다양한 전공의 공부를 경험한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사법시험을 많이 뽑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학생 모집 경로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대학에서의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 졸업 이후 다양한 현업을 경험한 학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언론인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법조를 들여 보다가 남에게 영향력 있게 봉사할 길을 찾는 젊은이일 수도 있고 오랜 기간 기업체에서 현업에 종사한 중년일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이와 같은 다양성은 사법시험에서도 추구할 수 있다. 학교를 다니나 안 다니나 상관없이 응시 회수에도 제한이 없다. 전업으로 공부하는 것을 누가 탓하랴.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가상해 보자. 무지무지하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예상되는 몇 년 간, 어떤 경우 1년이지만 재수 없을 경우 9수, 10수까지 해야 하는 불확실한 기간 동안 벌이 없이 어렵게 살면서 가족에게 폐를 끼칠 용기를 쉽사리 낼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걱정 때문에 진작에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나서서 몇 년을 보내고, 어쩌면 몇 십년을 보냈다고 치자. 이제 그가 생활의 안정을 찾고 나서, 또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이전과 같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게 되고 나서 젊은 날 가졌던 법조인에의 야심은 여전한함을 발견하였다고

치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1) 사법시험 (2) 현재의 로스쿨 (3) 야간 로스쿨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세가지 대안 중에서 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필자 같으면 (2) 또는 (3)을 택할 것이다. 실업자로 불확실한 몇 년을 보낼 것인가 그레도 끝이 보이는 과정을 택할 것인가. 서울 지역에 있는 명문 대학의 로스쿨이 현업 경험이 없는 젊은이만을 받아들인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만, 로스쿨은 법조 입문에 굳이 명문 대학 간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 서 있다. 나이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로스쿨은 그 나름대로 다양성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필자의 대학 시절 친구들, 선후배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시험을 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들이 다시 변호사가 되어 세상에 봉사하고 싶은 열정을 보인다고 할 때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무엇이겠는가, 사법시험? 로스쿨?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사법시험의 응시를 위하여 법학 과목의 이수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온당하지 못하다. 사법시험 자체도 대학의 대중화를 전제로 하였던 것이다. 방송통신대학, 독학사라도 학습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로스쿨 적합성이 충분함에도 신체 장애 때문에 대학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로스쿨의 책임은 아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에게 대중화된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전체 사회의 책임이다.

로스쿨을 굳이 다니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남겨 주기 위해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단 1회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바로 자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사법연수원이라는 특별한 로스쿨에 입학하는 시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별적인 사정을 무시하고, 전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급여까지 주는 로스쿨 말이다. 법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 전부에 대한 부담을 정당화하는 외부경제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자력 또는 개인적 선호 때문에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경청할만하다. 그렇다고 해도 시험 합격 후 모두 장학금을 받는 특별한 로스쿨을 다닐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다. 차라리 로스쿨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도, (1)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게 하거나, (2)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 아니면 사환으로라도 다니면서 실무 수습을 한 경력이 있는 자에

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실무상 합당할까. 아무래도 (2) 쪽이 재능을 발견하고 평가하는데 유리하고, 그리고 합격에 실패하더라도 수험생을 덜 멧들게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어려운 형편에 장학금으로 로스쿨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월함을 보이지 못하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생활을 해결해 가면서 변호사의 꿈을 키우는 것을 허용한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공부를 하기 위하여 따로 비용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돈을 벌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로스쿨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사법시험도 이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 시험 공부 는 그 자체로는 타인에 대한 편익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사람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한다고 국가가 수당을 줄 수는 없다. 국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하는 수험생 말고 달리 보살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 가족이 감당하기도 힘들다. 이들은 본래 가족에 의존하기 어려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법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명제는 타당성을 잃어버린다. 그보다는, 일하며 돈을 벌면서 법률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험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는 판사실에서 몇 년 이상 수습을 하면서 법률을 익혀 실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얻은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로스쿨졸업검정고시라고나 할까. 고입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 등등이 인정되는 마당에 말이다. 변호사들도 유능한 사무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현재의 사법시험은 다양한 경로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막는다. 전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업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서생에게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위하여 사법시험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특권적인 로스쿨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로스쿨의 학비가 비싸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도 미흡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또 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옹호하는 야성, 통념적인 규제에 저항하는 반항기일 수도 있다. 법률서비스를 수요하는 자는 변호사라고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절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를 ‘실력있는’ 소수로 제한한다고 생략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변호사협회가 법률의 근거 없이 ‘전문’ 분야 인정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화를 추구하고, 전문성 있는 자를 평가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미 시장은 변호사협회에 우월하다.

IV. 민주성

법조인은 현명한 자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식과 판단력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략은 정당화된다. 정치인이 국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과 대비된다. 그렇지만 직업적 특권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으로 가정되는 법조인을 오로지 시험 성적에 의존하여 뽑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는 것일까? 아니다.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엄밀하게 조상에게서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 받은 바를 기준으로 하여 특권을 부여한다면 그와 같은 부정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는 평화를 유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시험 성적으로 따지면 약간 부족해 보여도 장애인, 소수민족, 빈곤한 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가 법조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인 탁월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하에 공동체의 구성원 비율에 전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하여 대표성을 갖추는 여백은 구체적, 개별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물론 남용의 사례는 있을 수 있겠다. 나름 설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내부자의 친인척, 친지가 진입한다던가 선발과정에서 매수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남용 사례는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일이다. 다른 모든 사람이 불편을 감수할 일은 아니다. 남용의 사례가 있으면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행정편의적,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1) 쓰레기 종량제 하에서 돈을 아끼려고 거리의 휴지통을 전부 없애 버리는 바람에 전 국민이 다 마신 음료수 병과 컵을 들고 다니고 성급한 사람은 길거리에 버리는 바람에 대다수 시민의 편의와 거리의 청결이 희생 당하는 것, (2)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구입하여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하여, 내국인에게 폐지하였던 세관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써서 내게 하는 것, (3) 파산 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 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여 불편을 주는 것이 그것이다.

개천에 용이 나는 것을 사법시험제도가 허용하는 것이니 계층 간 이동을 위하여 남겨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자 중 극소수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름 출세와 치부의 길을 성취한다고 한 들, 그것은 소외계층 전반의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사람은 사법시험 아니더라도 성취할

분야가 많고 당연히 로스쿨 시스템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로스쿨을 통하여 창창한 앞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문제이지, 로스쿨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극히 일부가 복지를 개선하는 것은 라면만 먹고 훈련하여 올림픽메달리스트가 되는 것만큼이나 감동적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복지계층 전체에 좋은 영향을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다.

V. 음서제라는 비판, 돈스쿨이라는 비판

돈스쿨이라는 말이 있다. 비싼 돈을 내고 다녀야 하니, 그것은 사법연수원의 처우에 비추어 반사적인 것일뿐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거치는 사법연수원은 수업료도 없고, 봉급도 나누어 주는 전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특별한 로스쿨이다. 물론 가난한 자 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가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기나긴 수험생활을 커버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법률인이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바(외부경제)에 대한 보상을 미리 당겨서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수험생활을 제거하고 또 배출될 인재의 외부성을 가정하지 않는 로스쿨의 도입은 이러한 관념을 거부한다. 경제적 계산으로는 수익자부담, 내부화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인 배려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약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비난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가난한 법학도를 도와야 한다. 그것은 그가 법학도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부자들에게 편향적인 기회를 줌으로써 음서제를 결과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데 로스쿨은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주는 우월한 지위를 의도하지 않았다. 사실 부자에게 기회가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은 사법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시험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력과 관계 없이 대형 로펌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혜택 받은 금수저들일 것이다. 어차피 ‘흙수저’들은 실력의 탁월함을 입증하여 시장적인 방식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민간 부문의 진입이 쉽지 않아서 고독한 반항적 투사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충원 과정에서 다 생기는 문제이다. 극소수를 충원하던 시절이 지난 지금 변호사 자격만으로 민간 부문의 좋은 자리에 가기 힘든 현실은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시험 출신이든 당면해야 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아버지가 딸의 취업을 부탁

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유지하여도 가능한 일이고 로스쿨 만을 놓아 두어도 가능한 일이다. 잘못된 로스쿨에 있지 않다. 권력을 자신의 이익으로 횡령하는 윤리의 결핍에 있다.

과거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고등관이 되었다. 소수만이 공부하고 그 중 소수만이 합격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 후 이루어진 정치적 결단은 300명으로, 또 1,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극소수 엘리트로만 법률전문가 노릇을 한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고 법조인 대중화에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최소한이었다.

판사가 되려는 젊은이를 바로 법원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비판은, 그러한 충원방식을 사용하는 법원으로 돌려져야 한다. 이것은 로스쿨의 잘못도 아니고, 사법시험이 존속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젊은이들을 판사이든 재판연구원이든 바로 임용하지 않고, 재야 활동에서 실무능력과 윤리를 실현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할 일이다. 즉 "음서제"라는 주장은 인사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판사 시험을 따로 치르던지 아니면 내부에서의 청문회라도 거쳐 '음서' 아니라는 공개경쟁을 하던 지 말이다. 이것은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관직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든 시험으로 임명하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VI. 맺음말

필자는 지난 여름, 노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주최한 '1일주점'에 간 적이 있다. 거기에서 형편이 훨씬 좋고 더 강력한 다른 시민단체에 소속된 어린 변호사가 토끼 머리띠 두르고 쟁반도 나르며 봉사하는 것을 보았다. 지방의 어느 로스쿨(예전이였다면 별로 사법시험합격자 배출을 기대할 수 없었던)을 갓 나왔단다. 지금 생각하니 학벌에 신경 쓸만한 그이에게 '로스쿨 어디 나왔는 지'를 물어보지 말 것을 하는 후회가 있다. 하여튼 변호사 배출의 다양성, 진로의 다양성은 이렇게라도 강제되고 있었다. 어쩌면 이런 직위에 변호사 자격증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하방(下放)을 요구하는 것은 대중의 요청이라는 명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 약한 자의 입을 열어 권력에 대항하는 활동으로 미래의 오바마 대통령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하나라도 늘렸다는 것만 해도 로스쿨은 큰 성취이다.

성숙한 사회는 세상의 선의를 가정한다. 최고의 지성과 품성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가

정되는 법률인 사회에서 일부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미 오래 전에 탈피하겠다고 결단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적이다. 평소 존경하는 어느 전문가의 인터넷 상 발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모든 체계(system)는 잔류 수준의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잔류 수준의 실패란 사람다움의 역설적 표현이며 체계의 골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유격(裕隔)이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는 시도는 대개 체계 자체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로스쿨도 다르지 않을 뿐이다. 다른 법률인의 발언도 인용하고자 한다. 법에 있어서 95%는 대략 완벽함이다. 일부의 일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대략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파괴할 이유가 없다.

물론 선배들이 겪었던 고문과 같은 수험과정을 겪지 않고 들어온 후배들을 보고 질시를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 이러한 심리적 용태는 본질적으로 먼저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관하여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강도를 당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강도를 당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월한 정치적 선택일 것이다.

“그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심리적 용태에 의하면 로스쿨이 정착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에 반감을 가지기 쉽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업계에서는 은퇴할 때가 된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 운동, 그것은 개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들의 정치적 선호가 엇갈리는 사항에 대하여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대표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테크니컬한 의미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선호를 위하여 타인의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일개 지방변호사회의 모자를 쓰고 로스쿨 전형에 개입하겠다고던가 실무교수를 양성해 주겠다고던가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 최유경 박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최 유 경 박사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I. 들어가며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되고, 2009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어 온 지 올해로 7년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전문대학원’으로 학사학위¹⁾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한편²⁾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비용(高費用)’ 교육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다. 고비용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주로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³⁾ 특별전형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과 더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 대상유형과 기준 등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기준과 총 입학정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안배 등 후속적 논의에 가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 이후에도 「변호사 시험법」 제정과⁴⁾ 변호사시험 합격률, 예비시험제도 도입 및 사법시험제도 존치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 속에서 특별전형제도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셈이다.

* 본 발표문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원으로 수행된 것으로 향후 공간될 예정입니다. 발표자의 동의 없는 전재나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때 학사학위란 반드시 정규 대학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통신대,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
3) 국회사무처, 제258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2006. 2. 15.), 8면, 30면, 33면, 제269회(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2007. 10. 26.), 10-11면; 제28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6호(2009. 4. 22.), 28면;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4. 29.) 9면, 12-13면 등; 박선영,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험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해”, 고시계 제55권 제8호(2010. 8.), 84-86면 참조.
4) 변호사시험법은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어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총 6,104명의 변호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에 오늘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를 통해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특별전형제도의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성과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⁵⁾ 이 발표문에서는 특별전형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특별전형 유형을 살펴보고(II장),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 및 성과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자 한다(III장). 나아가 현행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VI장).

II. 특별전형제도의 법적근거와 유형

1. 특별전형제도의 도입취지와 근거법령⁶⁾

(1) 목적과 취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통해 종전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 제도는 ‘교육 과정’을 통한 법률가 양성으로 일대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야기되는 ‘고비용 교육구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그 지원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제한하고 있어⁷⁾ 법학전문대학원 3년 외에도 학부 4년의 비용까지 합한 7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는 비용이 든다는 비판이 있다.⁸⁾ 결과적으로 모두 비슷한 경제적 수준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법률가집단을 배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관점과 입장을 대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법률가 양성에 일정한 한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고비용의 교육구조로 편입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정책적으로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5) 특별전형제도에 관한 초기 분석으로는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2권 제2호(2011.8.)가 있으며, 박근용,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장학제도 현황”,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회의원 이춘석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집(2013. 6. 24.), 32-38면 등에서 논의되었다.

6) [별표 1] 참조.

7)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입학자격).

8) 이와 같은 비판은 이미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가장 최근 논의로는 이호선,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2015. 6. 18.) 자료집 63면 이하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특별전형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1항⁹⁾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제23조 제4항¹⁰⁾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¹¹⁾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체화했다.¹²⁾ 2009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동안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별전형 입학기준과 지원자격, 선발비율과 인원 및 구체적인 현황은 III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특별전형제도의 유형과 범위(2016학년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선발대상과 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토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채택해 온 특별전型的 유형은 해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분류가 용이하지 않으나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전형을 기준으로 특별전型的 유형과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1) 신체적 취약계층

a.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다음 등급에 따라 특별전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¹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급~제6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즉 장애등급에 무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급~제4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¹⁵⁾

9)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10)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학생선발)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12) 이중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2권 제2호(2011.8.), 72-73면.

13) 2016학년도 기준 각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유형과 지원자격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참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http://info.leet.or.kr/board/board.htm?bbsid=iphak> (마지막 방문: 2015. 10. 9.)

14) [별표 2] 참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지체장애인(1급~5급) 및 뇌병변장애인(1급~5급)으로 1년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b.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및 제5조)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자(1~9급, 장애등급에 무관함)
- 가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 1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이 4급 이상인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표 1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이 5급 이상인 자 등.

(2) 경제적 취약계층

a.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그 자녀(또는 가구원)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제2조 제2호, 경우에 따라서는 제5조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입학전형에 따라 가구원, 직계비속 등)를 기초생활수급자인 특별전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¹⁶⁾

b.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혹은 이와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또는 자녀)는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무가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조건으로 한다.

c. 차상위 계층 복지급여 비수급권자 중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서

15) 한국외대의 경우 장애등급 4급 이상인 경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16) 이화여대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재산세 합이 20만 원 이하이고, 부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이 월 7만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원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¹⁷⁾

d.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¹⁸⁾

(3)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a.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이 경우 장애등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별도로 경제적 취약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의한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의한 상이등급 4급 이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의한 상이등급 5급 이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본인)

b.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4)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최근 경향을 살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보다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특별전형 대상자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으로 특별전형 대상에 편입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조손가정 자녀(부·모 보호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결혼이민자, 귀화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8조에 의하여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17) 중앙대 2015년 입학전형 기준.

18) 경희대와 아주대는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상 읍·면 지역(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6년 전 교육과정(입학~졸업) 이수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단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은 제외),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¹⁹⁾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자녀)
- 「5·18 민주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로 인정하는 자(5·18 민주유공자 및 자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귀화자) 자 또는 그 자녀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및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자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에서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지원이 아닌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자
- 본인이 산업재해 1~3급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1~3급인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 받은 자
- 만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
-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참전유공자 제외)

III.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특별전형제도가 진입장벽 완화수단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과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특별전형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19) 영남대는 고등학교 3년 과정 이수자를 지원대상으로 함.

1.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

(1) 선발비율과 인원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이 모집정원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도록 해 특별전형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대체로 모집정원의 약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왔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계획상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의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평균 6.3%이며, 총 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평균 126명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되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원년인 2009년 총 1,998명 가운데 1,873명이 일반전형으로, 125명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고, 특별전형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²⁰⁾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선발비율 및 인원(설치인가 계획상)

학교명	입학정원	특별전형 선발비율/인원	학교명	입학정원	특별전형 선발비율/인원
강원대	40명	5% / 2명	영남대	70명	5% / 4명
건국대	40명	5% / 2명	원광대	60명	7.5% / 5명
경북대	120명	5.8% / 7명	이화여대	100명	6% / 6명
경희대	60명	7% / 4명	인하대	50명	6% / 3명
고려대	120명	5% / 6명	전남대	120명	10% / 12명
동아대	80명	5% / 4명	전북대	80명	7% / 6명
부산대	120명	6.6% / 8명	제주대	40명	10% / 4명
서강대	40명	7.5% / 3명	중앙대	50명	7% / 4명
서울대	150명	6% / 9명	충남대	100명	5% / 5명
서울시립대	50명	10% / 5명	충북대	70명	5% / 4명
성균관대	120명	5% / 6명	한국외대	50명	6% / 3명
아주대	50명	6% / 3명	한양대	100명	5% / 5명
연세대	120명	5% / 6명	평균	2,000명	6.3% / 126명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 다만 입학정원의 증감(전년도 대비 결원 보충 등을 원인으로 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당시 서울시립대와 전남대 및 제주대가 각각 10%에 달하는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서울시립대는 지속적으로 총 선발 인원의 약 10~12%를 특별전형자로 선발해 왔다. 반면 전남대는 2009년 12명(10%)을 선발한 반면 이듬해인 2010년과 2011년 각각 6명(5%)과 9명(6.9%)을 선발하다가 다시 2012년부터 각각 12명(9.8%), 10명(8.8%), 12명(10.9%)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제주대의 경우 2009년 개원 첫 해 4명(10%)이던 것이 2010년~2013년 5% 수준으로 하향조정 되다가 2014년 다시 10%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특별전형자를 전체 입학전원의 약 5~7.5% 수준에서 선발하고 있다.

(2)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유형 및 지원자격 분류

한편 2016학년도 특별전형 세부유형과 기준을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²¹⁾ 2009년부터 2016학년에 이르기까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특별전형은 특별전형 대상과 유형이 확대,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²²⁾ 이를 각 유형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체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대체로 지원자격이 ‘본인’으로 한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이 때 경제적 취약성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외대의 경우 4급 이상의 장애 등급을 받은 자의 ‘자녀’까지 특별전형 지원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장애등급에 제한이 없는 경우부터²³⁾ 1~3급 이내의 장애등급 만을 특별전형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²⁴⁾ 및 각각 4등급 또는 5등급을 신체적 배려 대상자로 특별전형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전히 지원자들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은 제도 도입 초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크게 구분되던 것에서 점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 자녀)와 차상위계층(및 자녀)로 확대되는 한편 후자를 ①복지급여 수급자(및 자녀)와 ②복지급여 비수급자(및 자녀)로 구분하고, 거의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들어 ③우선돌봄자격자(및 자녀)에게까지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추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교하면 차상위 계층의 범위나 기준은 다양하고,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배려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별전형 구체적인 운영현황은 항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²⁶⁾ 특별

21)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22)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함.

23) 2016년 특별전형을 기준으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및 아주대는 장애등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외대는 장애 등급 4급 이상일 것을 요하면서 장애인 자녀도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킴.

24)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은 1~3급 이내의 장애인을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한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입학전형에서 밝히고 있다.

25) 2016년 특별전형을 기준으로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는 4등급을, 경희대 및 전북대는 5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대, 건국대 및 고려대는 장애등급에 제한이 없고(1~6등급), 그 이외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1~3급 이내의 장애인을 신체적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형 입학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 기준은 일정 수준 객관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입학전형과 선별기준이 저마다 다르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지원자가 제출하는 각종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별 전형 계획상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사회·문화적 배려계층의 종류와 범위를 폭넓게 특별전형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2011년만 하더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인정된 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새터민 등이 그 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경우 이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포함시키는 대학은 종전 8개에서 20개로 증가하였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 자녀 또한 17개 학교에서 특별전형 세부유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인정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8개 학교), 지방자치법상 읍·면(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14개 학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현격히 증가했다.

26) [표 4] 참조.

[표 2]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유형 및 지원자격 분류(2016학년도 기준)

학교명	신체적장애			경제적취약성			국가공공자		의상자		사회적취약성						기타			
	장애등급없음	1~3등급	기타	국민초상수자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자녀(경제취약)	신체장애1~4급	장애등급없음	복합이주	농촌지역신	어지출자	아복시	동지설		다문화가정	산업재해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우선복자녀	본인	가정조건												
1 강원대	○			○		○	○				○									
2 건국대	○			○	○				○			○					○		○	
3 경북대		○		○	○			5급				○								
4 경희대			5등급	○	○		○	경제			○	경제	○	○			○		○	의
5 고려대	○			○	○				○			○	○	○	○	○	○	○	○	독, 보
6 동아대			4등급	○	○			신체(4급)	○	○	○		○	○	○	○	○	○	○	
7 부산대		○		○	○	○		신체(4급)												
8 서강대		○		○	○							○		○	○	○				
9 서울대		○		○	○		○		○	○		○	○							독
10 서울시립대		○		○	○			신체(4급)		○		○								○
11 성균관대		○		○	○			신체(4급)		○	○	○	○	○	○	○	○	3급	○	
12 아주대	○			○	○							○	○							의
13 연세대		○		○	○			신체(4급)	○	○		○	○				○			독
14 영남대			4등급	○	○			○	경제	○	○	○	○							고, 독, 특, 5·18
15 원광대		○		○	○			○	경제	○		○	○	○	○	○				고, 독, 특, 5·18
16 이화여대		○		○	○		○	○	경제			○	○	○	○	○				19
17 인하대			4등급	○	○			신체(4급)				○	○							
18 전남대		○		○	○	○		신체(3급)				○						○	○	소, 외, 근
19 전북대			5등급	○	○	○		신체(4급)			○	○	○	○	○	○			○	독
20 제주대			4등급	○	○		○								○					
21 중앙대		○		○	○	○	○					○	○				○			
22 충남대		○		○	○			신체(4급)		○										
23 충북대		○		○	○	○		신체(4급)				○	○				○			
24 한국외대			4등급/자녀	○	○	○				○		○								외
25 한양대		○		○	○				○		○	○					○			독, 보

*출처: 각 법학전문대학원 2016년도 입학전형

※ [표2]의 ‘기타’ 항목의 약어는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 ‘고’=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영남대, 원광대)
- ‘근’=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 받은 자(전남대)
- ‘독’=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경제적 취약)(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한양대)
- ‘보’=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고려대, 한양대)
- ‘19’=만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이화여대)
- ‘소’=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전남대)
- ‘5·1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로 인정하는 자(영남대, 원광대)
- ‘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 받은 자 중 귀화자 및 자녀(전남대, 한국외대)
- ‘의’=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및 자녀(경희대)
- ‘특’=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자녀(영남대, 원광대)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가. 전체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사회·문화적 계층은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9~2013년 한 통계에 따르면 총 484명의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신체적 취약계층(62명, 12.8%)과 경제적 취약계층(376명, 77.7%) 외에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은 약 46명(9.5%)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농어촌지역출신자(24명, 5%)와 국가유공자(15명, 3.1%), 소년소녀가장(3명, 0.6%) 외에 복지시설재원 경력자(2명, 0.4%),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정 각 1명(각각 0.2%)이 포함되는데 그쳤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최근사회·문화적 계층을 특별전형 세부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대체로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취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준은 대체로 다음 범위 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경제적 열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 구성원 전부의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이고, 본인, 배우자, 부모의 최근 3년 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분 포함)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자²⁸⁾(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 이하)

27) 박근용, 앞의 글, 36면.

28) 강원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 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 구성원 전부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이고²⁹⁾, 본인, 배우자, 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처분 포함)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자³⁰⁾
- 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지방세납부액이 월 5만 원 이하인 세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5만 원 이하이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5만 원 이하인 세대 구성원³¹⁾
- 연간소득 총액 3,000만원 미만으로 세대 전체 지방세납부액이 연간 30만 원 이하인 세대 또는 종합소득의 경우 세대 전체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평균 1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체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30만원 이하인 세대³²⁾

(3) 특별전형 공통기준에 관한 계획(2017년 예정)

최근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³³⁾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은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어온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별전형 통일 기준은 [별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특별전형 기준의 통일 기준을 보여 주는데, 특별전형 제도 대상과 공통기준으로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과 ②자율기준으로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선발유형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³⁴⁾

a. 공통기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일안의 공통기준은 먼저, 신체적 배려대상으로 신체적 장애 등급에 사실상 구분이 없도록 하는 한편 ‘장애등급 6급 이상인 본인’을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1~3급, 4급 이상, 5급 이상 또는 장애등급 구분 없음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기준이 통일되고 그 대상은 ‘본인’으로 한정된다.³⁵⁾

경제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2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2배 미만을 요구함.

3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3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3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33) 교육부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마련, 2017학년도 실시- (2015. 5.) 참고.

34) 교육부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된다”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마련, 2017학년도 실시- (2015. 5.), 1-2면.

35) [별표 5] 참조.

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및 동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를 공통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 자체 기준)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자체 기준)를 공통기준으로 하고 있다.

b. 자율기준

통일안은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별표 6]에 열거된 다양한 계층이 자율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³⁶⁾ 가령 경제적 배려대상으로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가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자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등을 들 수 있다.³⁷⁾

2. 특별전형 선발현황(2009-2014)

지난 7년 간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선발된 입학자는 얼마나 될까.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759명, 전체 선발 인원 대비 약 6.14%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현황은 [표 3]과 같다.

3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6] 자율기준안(1) 참조.

37) [별표 6] 자율기준안(2) 참조.

[표 3]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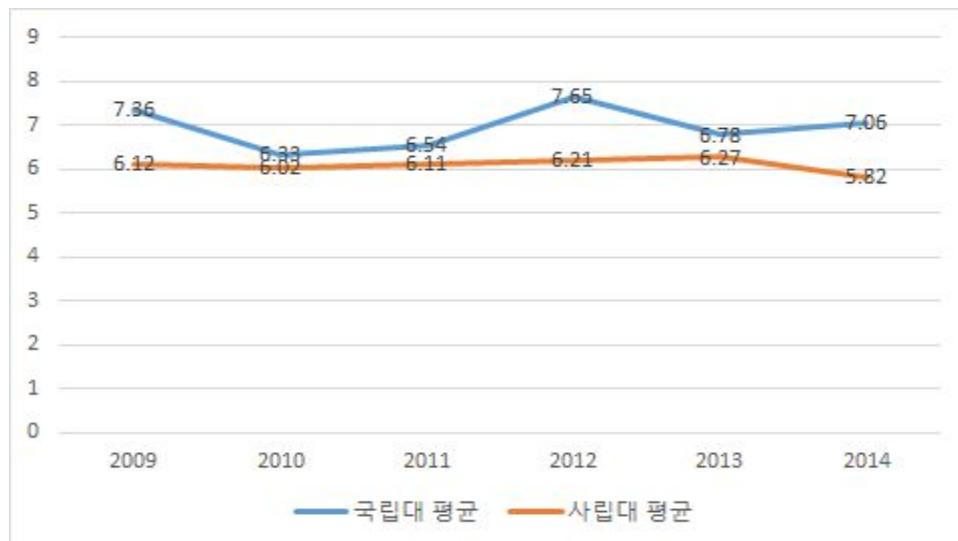
대학명	정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선발인원	선발비율
전체 평균		125	6.25	116	5.80	124	5.93	134	6.41	128	6.10	132	6.37	759	6.14
국립대 평균		61	7.36	53	6.33	57	6.54	66	7.65	59	6.78	65	7.06	361	6.48
사립대 평균		64	6.12	63	6.02	67	6.11	68	6.21	69	6.27	67	5.82	398	5.79
서울시립대	50명	5	10.0	5	10.0	6	12.0	6	11.3	5	9.8	5	10.0	32 (최고)	10.5 (최고)
건국대	40명	2	5.0	2	5.0	2	4.65	2	4.55	2	4.65	1	2.56	11 (최저)	4.4 (최저)

*출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 선발인원 : 특별전형 대상 선발인원(정원 내 + 정원 외)

** 선발비율 : '09년 2,000명, '10년 2,000명, '11년 2,092명, '12년 2,092명, '13년 2,099명, '14년 2,072명, '15년 2,084명 대비

[표 3]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125명, 115명, 124명, 134명, 128명, 132명이 각각 특별전형으로 선발되었으며, 이는 해당 연도의 총 선발인원 대비 6.25%, 5.08% 5.93%, 6.41%, 6.10% 및 6.37%에 해당한다.



[그림 1] 국립대 v. 사립대 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추세(2009~2014)

이 가운데 국립대는 361명으로 약 6.48%, 사립대는 398명으로 약 5.79%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 보다 국립대의 특별전형 선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추세는 [그림 1]과 같다. 최근 사립대학의 특별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이

하로 낮아진 반면 국립대학의 선발 비율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모집인원이 총 759명인데 비해 약 2,696명이 출원하여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서울대(평균 6.2 대 1)와 아주대(평균 6.1 대 1)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시립대(평균 5.4 대 1), 고려대(평균 4.7대 1) 및 영남대(평균 4.9 대 1)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상대적으로 부산대(평균 2.4 대 1), 제주대(평균 2.3 대 1), 전남대(평균 2.2 대 1), 충북대(평균 2.1 대 1)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표 4] 특별전형 세부기준에 따른 입학자 현황(2010~2014년)

연도	신체적 취약성 (장애인)	경제적취약성		국가유공자	사회적·문화적 취약성					합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자녀	차상위 계층 및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새터민)	농어 촌 역 출 신 자	아 동 복 지 시설	소년 소녀 가 장	고 업 제	
2010	23	30	50	7		14		1		125
2011	18	49	43	3	1	5			1	120
2012	19	53	54	2		8			2	138
2013	15	52	47	4	1	9	1		1	131
2014	14	38	57			23				132
합계	89	222	251			83				646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전형 입학자를 세부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는 2010~2014년 동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현황을 세부기준별로 집계한 것으로³⁸⁾ 법학전문대학원별 특별전형 세부기준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부 오차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및 그 자녀)와 차상위계층(및 그 자녀)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총 473명으로 약 73.2%(총 646명 기준)를 차지해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내로 편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적 취약계층이 89명(13.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을 제외하면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이 83명(12.8%)으로 집계된다.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의 경우 최근 전형 유형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음은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이들의 경우 측정한 특별전형 유형에 속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취약성’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기도 한다.

38) 선행연구로서 박근용, 앞의 글, 36면은 2009년~2013년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입학자 세부기준별 인원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2010년~2014년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에 따라 새로운 집계를 소개하도록 하였다.

3. 특별전형 입학자 장학금 지급현황(2009-2013년)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대체로 특별전형자에 대하여 지원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는 동안 특별전형자 약 93.64%에게 88.14%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³⁹⁾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입학자가 고비용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4. 특별전형제도 운영성과

그렇다면 특별전형제도 운영의 성과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특별전형제도 입학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현황과 졸업 이후 사회 진출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특별전형자 입학자 변호사시험 합격현황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회(2012년)부터 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총 6,104명이며, 이 가운데 특별전형자는 약 315명(약 5.1%)에 이른다.⁴⁰⁾ 특별전형자가 전체 정원의 평균 6.14%인 점과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성과다. 제1회~제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대부분 2009년~2012년 입학자들로 이 기간 선발된 특별전형자 총 499명을 기준으로 할 때⁴¹⁾ 특별전형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평균 63.1%에 이른다. 같은 기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특별전형제도가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총 75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6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국가유공자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도 4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⁴²⁾

39) [별표 3] 참조.

40) 이러한 통계는 총2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집계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하면 315명을 상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1) [표 3] 참조

4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 참조

[표 5]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24개교)

(단위: 명)

구 분	1회(2012년)	2회(2013년)	3회(2014년)	4회(2015년)	총(명)
총 합격자수	1,451	1,538	1,550	1,565	6,104
특별전형자	82	75명	83명	75명	315명

*출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무부

(2) 특별전형 입학자 취업현황

끝으로 특별전형자의 사회 진출현황은 어떠한가. 특별전형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전형입학자의 ‘법률가 진출’ 여부가 실질적인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표 6]은 2012년부터 2014년 특별전형제도 입학자의 취업현황을 집계한 것인데, 이 표에서 보듯이 특별전형 입학자 가운데 약 98명(약 31.1%)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변호사 개업 포함)로 진출하였다. 한편 사기업 28명(8.8%), 검사 및 재판연구원, 법무관 등으로도 약 24명(약 7.6%)이 진출했을 뿐 아니라 그 외 공공부문인 중앙행정기관(9명) 및 그 밖의 국가기관(3명), 지방자치단체(2명), 공기업(4명), 기타 공공분야(7명)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계 시점을 기준으로 병역 및 진학, 연수 등 미취업자는 약 13명이었으며 향후 이들이 취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별전형자들의 사회진출 비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 법관 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중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37명이 법관에 임용되었지만, 이 가운데 특별전형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표 6]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 (21개교, 2012~2014년)

구분	검사	재판 연구원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	변호사 개업	기업	공공 부문	협회 등	법무관	기타	합계
2012년	2	2	23	9	3	8	15	2	4	1	69
2013년	1	1	21	9	2	12	2	0	5	1	54
2014년	2	2	18	13	0	8	8	0	5	2	58
합계	5	5	62	31	5	28	25	2	14	4	181

*출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IV. 검토 및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전형제도의 7년간 운영현황과 성과를 바탕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현재 특별전형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과 높은 진입장벽에 대한 기존의 비판에 대해서 충분한 해소책이 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특별전형제도의 세부유형 및 기준, 운영현황과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특별전형제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특별전형 세부유형 및 기준의 통일성 부재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별 특별전형 유형과 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만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표 2] 참조). 이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위한 평가기준상 특별전형 입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실제적인 사회적 취약성’의 반영여부와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의 다양성’이라는 다소 상반된 평가요소가 동시에 포함됨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들마다 체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 사회적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류 기준들이 혼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⁴³⁾ 그 후 특별전형의 세부유형 및 선발기준은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되어 왔으며 크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문화적 계층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도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그러나 특별전형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특별전형 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⁴⁾ 특별전형제도와 같이 일정한 계층을 기준으로 적극적 평등 조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나치게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⁴⁵⁾ 특정 계층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통해 실

43) 이종수, 앞의 글, 72-74면.

44)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해서는 미국 로스쿨의 경우와 관련해서 이론적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Kent Kostka, "Higher Education, Hopwood, and Homogeneity: Preserv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in a Scrutinizing Society", 74 Denv. U.L.Rev. 265(1996); Deborah C. Malamud,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Lessons and Caveats", 74 Tex. L. Rev. 1847(1996); Tung Yin, "A Caribolic Smoke Ball for the Nineties: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31 Loy.L.A.L.Rev. 213(1997); Jerome Karabel, *The New College Try*, N.Y. Times, Sep. 24, 2007, A23면; Neil Goldsmith,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Creating New Mode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Vol. 34(2010), 313면 이하; Richard D. Kahlenberg, "A Better Affirmative Action: State Universities that Created Alternative to Racial Preferences", A Century Foundation Report(<https://www.tcf.org/assets/downloads/tcf-abaa.pdf>); Richard D. Kahlenberg(ed.), *America's Untapped Resource: Low-Income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Century Foundation Press(2004) 등 참조.

45) Neil Goldsmith, "Class-Based Affirmative Action: Creating New Mode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Vol. 34(2010), p.336.

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계층의 범위, 고려 정도를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가령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정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사회·문화적 특별전형 세부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특별전형’ 제도 그 자체의 의미는 오히려 퇴색하게 된다. 더 이상 ‘특별’ 전형이 아닌 또 하나의 일반전형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특별전형 기준이 광범위할수록 취약계층 간에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겨나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의 층위를 다양화하는 것은 실제 사회·문화적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일부 지원자들이 특별전형제도의 남용을 통한 부조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⁶⁾

물론 특별전형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통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에 따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특별’ 전형의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전형의 외연을 한없이 확장시키기보다 우리 사회가 ‘과연 누구를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으로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신체적 취약계층의 경우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취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제적 취약성’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경제적 취약성을 특별전형의 주된 기준으로 하되 그 판단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2017년 시행 예정인 교육부 통일안도 여전히 경제적 취약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제 그간의 특별전형제도 운영 경험과 실패를 바탕으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할 시점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경제적 취약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하되 그밖에 외에도 지원자가 처한 여러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⁴⁷⁾ 지역(geography), 부(wealth), 가족의 교육력(family education history), 중·고등교육정보(secondary education information) 등은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⁴⁸⁾

2.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 운영현황과 그 성과를 보면 고비용 교육 구조의 문제는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사법시험 출원자 및 합격자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관한 통계나 특별전형 지원 대상자가 일반전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46) 이종수, 앞의 글, 73-74면.

47) Neil Goldsmith, 앞의 글, pp.336-337.

48) Neil Goldsmith, 앞의 글, pp.341-345.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도 특별전형자의 복수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현행 특별전형제도의 비율은 적정한 수준인가. 이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는 없지만 특별전형의 유형과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특별전형제도 운영 비율을 현재 평균 6.3%에서 7% 이상 1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몇 퍼센트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일정한 비율을 강제하기 보다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특별전형 입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나 취업현황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⁴⁹⁾ 다만 특별전형 입학자 비율이나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곧 법학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가 법학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고비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 특별전형제도와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 가야 할 것이다. 일례로 최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역량 강화 및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16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⁵⁰⁾ 국회를 비롯한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⁵¹⁾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데 있어서도 점진적인 제도 운영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교육제도의 개혁에는 무엇보다 인내와 관용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특별전형 지원자의 요건심사·감독 권한 기관 설치

특별전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운영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전형 관련 서류 등을 일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의 협력을 얻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의 설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탈북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

49) 가령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정과 특별전형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0) 머니투데이, 2015.5.1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1814592376669&outlink=1> (마지막 방문: 2015. 10. 9.)

51) 서울신문, 2015.10.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9009006> (마지막 방문: 2015. 10. 9.)

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복지급여 비수급자의 경우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 요구하고 별다른 검증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⁵²⁾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재산상황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명확한 진상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대체로 복지급여수급자와 복지급여비수급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차상위의료급여(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증명서를, 후자의 경우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혜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로 하여금 ‘자기확인서’⁵³⁾를 통해 스스로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세·월세) 등 본인이 특별전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체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⁵⁴⁾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서로 다른 전형 기준과 제출 서류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일면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특별전형자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기관은 특히 특별전형지원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득분위 등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납부실적, 지방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이를 근거로 추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전형 입학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마치며

특별전형제도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속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적극적 affirmative action)이다. 특히 총 입학정원 2,000명 ‘내’에서 약 6% 가량을 특정계층에게 정책적으로 할당하고 있어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이라는 지평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함의를 가진다. 지난 7년 동안 운영해 온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제도의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기대 이상이다. 무엇보다 특별전형 입학

52) 이 같은 제도 운영상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 지원자들은 형제 또는 친척 등에게 재산을 명의이전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조작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도 있다. 법률신문, 2010.3.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1705> (마지막 방문: 2015. 10. 9.)

53) [별표 4] 참고.

54) 그러나 ‘자기확인서’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자가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다양한 전문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와 연계하는 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방안으로서 특별전형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현재 특별전형제도는 세부유형과 기준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취약성’을 주된 심사 기준으로 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을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 심사 결과에 더하여 지역, 부(富), 가족의 교육력(教育歷), 중·고등교육정보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서 특별전형자 심사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⁵⁵⁾

만일 지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전형제도의 운영이나 장학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⁵⁶⁾이 사실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이를 경청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5) Neil Goldsmith, 앞의 글, p. 335.

56)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집안의 소득이 4분위가 되어도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될 것을 생각하지만, 현재의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전 국민의 50%에 해당하는 3~7분위 국민의 경우 쉽게 로스쿨에 자녀를 진학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법조인 선발이 소득으로 인해 왜곡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소득분위 9~10 분위에 속하는 계층만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로스쿨 진학에 진입장벽을 느끼지 못해 상대적으로 법조계 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될 것이다.” 천도정·황인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 분석”, 경성e북스(2014), 72-75면, 이호선, 앞의 자료집, 63-64면에서 재인용.

[별표1]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학생선발 관련 법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5.18.] [대통령령 제26240호, 2015.5.18., 일부개정]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5.18.] [대통령령 제26240호, 2015.5.18., 일부개정]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별표 2] 2016학년도 특별전형 유형(지원자격) 분류

분류	지원자격	해당 로스쿨
신체적 취약	3급 이상	경북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4급 이상	동아대, 영남대, 인하대, 제주대
	5급 이상	경희대, 전북대
	장애등급 제한 없음(1~6급)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아주대
	자녀포함(4급 이상)	한국외대
의상자	신체장애 4급 이상	동아대(경제),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경제),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등급 제한 없음(1~9급)	강원대(8급), 경희대(경제), 원광대, 전북대, 한양대(경제)
	자녀포함(경제적 취약)	원광대
경제적 취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및 자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및 자녀	강원대, 부산대, 아주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차상위 우선돌봄 자격자 및 자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및 자녀	경희대
국가유공자	[본인] 3급 이상	전남대
	[본인] 4급 이상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본인] 5급 이상	경북대, 경희대
	장애등급 제한 없음(1~7급)	강원대, 서울대, 아주대, 제주대, 중앙대
	장애등급 제한 없음(1~7급)(경제적 취약) 자녀포함(경제적 취약)	경희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경제적 취약)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한국외대, 한양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한양대
사회·문화적 취약	다문화가족 자녀(경제적 취약)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농어촌지역 출신자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인정된 자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전남대, 전북대
	만 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	이화여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전남대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용허가 받은 자 중 귀화자 및 자녀	전남대, 한국외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	영남대, 원광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영남대, 원광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영남대, 원광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자녀	원광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 보험급여 수급권자 - 요양·휴업·장애·간병·유족급여, 상해보상연금	서강대(3급), 성균관대(3급), 아주대, 전남대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으로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실상 부양능력 없는 자	동아대, 서강대, 아주대, 전북대(등급 제한 없음)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	고려대, 한양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받은 자	전남대	

[별표 3]

학교명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강원대	100	100	87.5	87.5	90	90	90	90	75	74	88.5	88.3
건국대	100	97.5	100	91.5	100	77	100	81.3	100	73.3	100	84.12
경북대	100	100	100	98.1	100	91.9	94.7	86.7	94.7	99.1	97.88	95.16
경희대	62.5	62.5	75	61.8	91.7	80.9	84.6	66.2	100	85.5	82.76	71.38
고려대	63.3	49.6	56.4	48.4	79.4	64	85	78.8	80.1	75	72.84	63.16
동아대	100	81.3	100	100	75.5	75.4	100	100	95.9	88.4	94.28	89.02
부산대	92.9	92.9	100	76.6	89.8	74.9	81.8	78.4	92	76	91.3	79.76
서강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대	70	51.3	76.3	60.5	91.1	82.1	92.9	91.1	100	97	86.06	76.4
서울시립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100	100	99.8
성균관대	100	87.5	100	92.5	97.1	79.8	100	84.9	97	81	98.82	85.14
아주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세대	100	100	100	92	97.1	94.4	100	98.1	94	99	98.22	96.7
영남대	100	100	100	100	95.8	89.6	86.7	77.3	100	91	96.5	91.58
원광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화여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96.5	100	99.1
인하대	83	61	100	88	89	77	100	71	94.4	81.5	93.28	75.7
전남대	100	91.2	96.9	90.7	87	80.9	75.8	75.6	85	89.7	88.94	85.62
전북대	100	100	89	89	93.3	93.3	94	94	100	100	95.26	95.26
제주대	87.5	87.5	75	75	92.9	92.9	83.3	83.3	83	80	84.34	83.74
중앙대	100	100	100	100	95.8	95.8	100	96.5	82.6	81.6	95.68	94.78
충남대	100	100	90	90	93.8	87.5	100	100	100	100	96.76	95.5
충북대	100	100	81.3	73.6	79.2	65.6	75.0	60.8	75	75	82.1	75
한국외대	100	87.5	100	80.4	100	72.2	100	79.2	100	86.1	100	81.08
한양대	100	100	87.5	87.5	100	100	100	100	100	100	97.5	97.5
총 평균	94.4	90.0	92.6	87.3	93.5	86.5	93.7	87.7	94.0	89.2	93.64	88.14

[별표 5]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 통일안(교육부, 2015. 5월 현재)

선발유형	내 용
신체적 배려 대상	<p>〈공통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은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p>〈공통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p>〈자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 기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사회적 배려 대상	<p>〈공통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자체 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학교자체 기준) <p>〈자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등 ▪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 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별표 6]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안(2017년 예정)

당초	변경	
	공통기준	자율기준
◆ 선발유형 상이 - 신체적 취약, 의사자, 경제적 취약, 국가유공자, 사회·문화적 취약자 등 ⇨ ◆ 선발유형별 지원기준 상이 - 장애등급 3~6급, 국가유공자 3~7급 등	◆ 신체적 배려 대상 -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 ◆ 경제적 배려 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사회적 배려 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경제적 여건 고려)	◆ 선발유형별 자율기준 별도 마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5. 5.)

자율기준안(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
-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률」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 등
- 「지방자치법률」에 따른 농·어촌지역 출신자 등
-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공자 등
- 기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학에서 인정하는 자

자율기준안(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용허가 받은 자 중 귀화자 및 자녀(전남대, 한국외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영남대, 원광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영남대, 원광대)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자녀(원광대)
-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으로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실상 부양능력 없는 자(성균관대(3급), 전남대)
-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고려대, 한양대)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받은 자(전남대)

‘법학전문대학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토론) 강민정 검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학전문대학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토론) 공태윤 차장 (한국경제신문)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공태윤 차장 (한국경제신문)

<법학전문대학원 성과와 제도 개선> 세미나 토론자로 나온 한국경제신문 공태윤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신문사에서 대학생들의 청년취업과 고용에 대한 기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법대출신으로 사법고시에 수차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낙방의 아픔이 최근 대학생 취업난의 기사를 쓰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고시 낙방후 저는 진로를 바꾸어 기자생활을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본 한 선배의 이야기와 기자생활 중 본 한 후배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사법시험의 폐단과 로스쿨의 장점을 이야기 하려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주위에서 봐 왔던 사례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제가 졸업할 무렵인 1990년대초에만 있었어도 어찌면 저는 기자가 아닌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 삼성입사했던 ‘고시낭인’ 선배

대학 4학년(23살)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방을 쓰게 된 룸메이트는 당시 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이미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삼성입사후 고시에 대한 미련을 못버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고시인이 된 선배였습니다. 뒤늦게 다시 공부를 하는 선배였기에 심적 부담감이 무척 컸을 겁니다. 숙소문을 여닫는 흔히 들리는 작은소리도 용납을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날때 들리는 슬리퍼 소리에도 민감했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그 선배의 신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모두가 그 선배와 룸메이트를 하기를 꺼렸기에 고시원 신참인 제가 룸메가 된 것입니다.

여하튼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30살을 넘어서는 고시를 해선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어서 그런지 몇차례 사시낙방후 빨리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기자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선배의 ‘고시낭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 대학교시반을 나올때까지도 그 선배의 모습은 제가 입반할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후 기자가 된후 사법고시로 인생역전(지금은 안 그렇지만)을 꿈꾸는 고시낭인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초에는 전도유망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법조인인 된 ‘유능한 후배기자’

2000년후반계 회사에 한 유능한 후배기자가 난데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아마도 법학전문대학원 1기 신입생을 모집을 앞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배기자는 증권부, 경제부, 사회부, 생활부 등을 거치면서 많은 특종기사를 썼고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친구였기에 기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던 날 그 후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법조인을 꿈꿔왔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기자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언론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후배기자가 퇴사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방의 한 국립대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쉽지 않은 입학시험이었을텐데 참 대견했습니다. 이후 그는 로스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쳐 올초에는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로스쿨이 한 젊은이의 진로를 바꾼 것이지요. 저는 법조인을 꿈꿨던 제2, 제3의 후배기자같은 사람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로스쿨의 설립의 도도 다양화 된 사회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되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3. 야간·사이버로스쿨 도입 기대

몇달전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법시험과 달리 다양성이 강점인 로스쿨이 앞으로 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 도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건축·IT·의학 등 분야에서 10년이상의 경력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40대중반인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과 경쟁해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들의 실력과 경력을 로스쿨이 흡수할 수 있다면 로스쿨은 더욱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 더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박근용 참여연대 처장님의 말씀처럼 전문직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이 법전원에 입학할 하고 있는데 졸업후에는 가능하면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전문가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시대의 유물인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인 로스쿨 취지를 잘 살린다면 더이상 ‘로스쿨 낭인’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토론) 김두열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법학전문대학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김 두 얼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1.

먼저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협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법조전문인력정책이나 법률시장 관련된 주제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제에 대한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경부터 2-3년 동안 저는 KDI에 근무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과 관련해서 법조전문인력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또 변호사협회 등 법조전문가단체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분들과 공개석상이나 사석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근거도 없는 보고서에 나온 수치들을 들고 와서 밀도 끝도 없이 변호사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거나 사법시험 합격인원을 무조건 1,000명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과의 논쟁에서 진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조전문인력 관련 주제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고, 결국 이 주제에 대한 연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의욕을 갖도록 하는 여러 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그런 자리입니다. “사시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한다”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는 논자들과 비생산적인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전문원 제도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논의 자체가 생산적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의욕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

저는 현재 우리나라 법전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전원이 1)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학비는 국민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에게 장학금까지 제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 교육과 관련해서도 법전원 학생들은 졸업시점까지 기초 과목들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면서도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3) 법전원 학생들의 수업 학점이나 변호사시험 성적은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워 공개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법전원 학생들이 성적에 매달리지 않고 폭넓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시당초 달성할 수 없는 상충된 목표를 제시해 놓고는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법전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시로의 회귀를 위한 논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공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면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변호사협회는 이상과 같은 규제 중 상당수 도입을 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미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그 규제들을 일일이 성토하는데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규제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나라 법전원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전원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범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법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듯합니다. 저는 미국 학계 혹은 대학이 가지는 가장 큰 미덕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가장 빛을 발하는 영역은 역시 전문대학원 (Professional School)들입니다.

미국의 일류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의 교수진을 보면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물론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교수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의 경우, 경제학 분야를 위시해서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은 물론

론 최근 들어서는 철학 전공자들까지 교수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법전원의 경우도 소위 최고 학교(top school)들에는 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법학과 경제학 두 개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경제학 학위만 가진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른 전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법전원이 교수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법이라는 현상이 어떤 틀에 갇힌 ‘법학’만으로는 포괄될 수 없다는 고민 혹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가능한 한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현실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 구성의 다양성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학교 간 학풍의 차이, 다양한 법학 조류의 등장, 그리고 이들 간의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는 자양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전원의 교수 구성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전원 구성원들이 “학생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연구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기존의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모해가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을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법전원 교수진은 “법학 학위를 가진 연구자의 공동체”를 넘어 “법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문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도 지금보다 심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전원은 학생들의 출신이 다양하다는 것 이상으로 다양성을 심화, 발전하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수전공 (double degree)의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5-6년 걸리는 경제학 박사와 3년이 걸리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순차적으로 10년에 걸쳐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학생들은 5-6년 내에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 후속세대의 육성은 물론, 법률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이상과 현실 사이



(토론) 김태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로스쿨, 이상과 현실 사이

김 태 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양성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 서론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문제점이 상당히 개선되지 못하였거나 비슷한 정도의 문제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면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일부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법조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으나, 입학 단계에서부터 실무수습, 취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쉽게 개선되기도 어려워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흘렀지만,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 중에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힘을 얻고,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은 바로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로는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사법시험과 같이 ‘선발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출범하였지만, 당시의 이상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크다. 이러한 이상조차 일본의 것을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의 사법시험 제도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치하자고 하는 사법시험이 반드시 기존 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개선, 개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처럼 사법시험을 병존시켜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을 키워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이 아닌 교양과 도덕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 로스쿨 제도와 비슷한 취지로 -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이 왜 다시 의대로 회귀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허구다.

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고,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법시험 하에서도 법조인들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35학점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였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았다. 더욱이 기존의 법과대학이 거의 그대로 간판만 바꾸어 로스쿨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는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반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없고,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가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로스쿨을 도입했으나 로스쿨 제도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법과대학이 거의 그대로 로스쿨로 간판만 바꿔달았고, 기존의 법과대학 교수들이 로스쿨 교수가 되었지만, 교육과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교수들이 법과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없고,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로스쿨에서 가르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실무가 출신

의 교수 지도 아래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 과정을 거치지만, 로스쿨의 실무가 출신 전임교수는 20%가량에 불과하다.

다. 로스쿨에서 기존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 보다 더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차치하고 예전만큼이라도 법률실무가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민간영역에서 해결하겠다고 하여 도입된 제도다. 이를테면, 법조인 양성의 민영화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제대로 된 실무교재 하나 만들지 못하여 학생들은 사법연수원 교재를 공동구매하여 활용하고 있고, 로스쿨 자체적으로 실무교육을 하지 못해 현직 판사,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하는 사법연수원 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사법연수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내의 유명 로스쿨 교수가 중간, 기말고사에 사법연수원 45기 소송 기록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이 반발을 한 일도 있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등한시 하고, 신림동 학원 강의에만 몰려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로스쿨 도입으로 이러한 현상이 사라질 것처럼 장담하였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신림동에서 법률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넘어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부터 법학적성시험 대비학원, 자기소개서, 면접 대비 학원까지 다니고 있고, 최근에는 로스쿨 학점을 관리하는 학원까지 등장하여 오히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는 더 커졌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로스쿨에 신림동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기도 한다.

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보다 더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양성, 배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상에서 도입되었다.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보다 더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자격 제도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고 그 자격을 갖춘 실력이나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조차도 전문가로서 해당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일부의 사례를 두고,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가장 실력이 낮은 사람이

변호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정도의 지식과 자질이 없다면 자격제도로써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에 불과하고, 오랜 세월 공부를 해도 합격 여부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었다. 높은 경쟁률과 낮은 합격률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실력 있는 법조인 배출을 담보할 수 있기도 하였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합격한 후에는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보다 로스쿨에서 기존의 법과대학 교과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과정을 마친 변호사가 더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6,000명가량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었지만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법시험 준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익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과 전문성까지 갖추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마.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정, 변호사 시험으로는 변호사로서 적절한 법률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은 4회에 걸쳐 치러졌고, 합격률은 제1회 87.25%, 2회 75.17%, 3회 67.63%, 4회 61.1%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높은 합격률에 위와 같은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더해지면 과연 이러한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사법시험의 높은 경쟁률 뚫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바. 로스쿨이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전문화,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있다. 전문화, 특성화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후이나 가능한 것인데,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습득시키고, 전문화, 특성화 교육까지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로스쿨 내부에서조차 3년의 기간으로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하는데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2~2014년 ‘학교별 특성화 과목 개설 및 폐강 현황’을 보면 25개 로스쿨의 평균 특성화 과목 폐강률은 16%수준이고, 2곳은 50%가 넘었으며 폐강률이 64%에 달하는 학교도 있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특성화 과목 수강 인원이 전체의 10%를 넘는

학교는 8곳에 그쳤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제103, 104쪽 참고).

사. 그 외에 제주대, 경북대 로스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자습을 하게 하거나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례, 각 로스쿨들이 학생들에게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조기 종강을 하는 사례 등 학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아.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있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서의 첫 걸음이 바로 기본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고 할 것인데, 입학과정에서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로스쿨의 취지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률가가 되었고, 변호사 수가 대폭 늘었다는 사실을 들어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변호사 1만 명이 배출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2만 명으로 되는 데는 불과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과거 변호사 수를 국가가 통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증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수가 늘어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를 늘이면서 항상 기존의 질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스쿨 제도는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에게 쉽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준 다음, 그들이 각자의 영역으로 돌아가 변호사로서 활동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합격률은 3%에 불과하니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법조인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로 배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은 예를 들면, 의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의료전문변호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은 다르다는 것이다. 의사가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료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사 자격이 없더라도 의료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더 유능한 의료전문변호사일 수 있다. 이처럼 로스쿨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비법학사들의 법조 진출 비율이 늘어났고, 이를 로스쿨 제도의 성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이는 법으로 일정비율의 비법학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법학사들을 상대로 3년의 기간 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을 마쳐 법조인으로 양성, 배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혹자는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들을 사법시험 출신들과는 달리 별도로 1년을 교육시키고, 경력 법관으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들을 사법시험 출신들과는 달리 별도로 8개월 교육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연차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무죄 판결 비율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제169-170쪽 참고).

또,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살려 그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6,000명가량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었지만, 자신의 전공분야와 경험을 살려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기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이 69.2%에 그쳤다. 게다가 법조계 진출 비율은 평균 44.9%로 절반에도 못 미친 것(2015. 9. 15.자 로이슈,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참고)만 보더라도 이상과 현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께서 제시한 자료로도 알 수 있듯이 비법학사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9년에 65.5%였던 것이 2013년에는 44.6%로 20% 넘게 줄어들었다.

결국 법학사들의 로스쿨 진학이 많아져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는 비법학사들에게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가르쳐 법조인으로 배출하는 것이 어렵다(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처음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 중 하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을 뽑아 변호사로 만든 다음, 그 분야에서 활약하도록 하자는 이상적인 것이었으나 최근 로스쿨 입학 결과를 보면, 이러한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하가 82.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전체 로스쿨 입학생 1만439명 가운데 8598명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이 30세 이하였고,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이었다.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로 나타났다(2015. 9. 15.자 뉴스토마토, 로스쿨 입학생 30세 이하 82%...“나이장벽 심각” 김진태 의원 “30대 법포세대로 전략 우려” 참고).

이는 처음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각 로스쿨에서 이른 바 스펙 좋은 어린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도 사회경험자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로스쿨 진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조시장은 변호사들이 포화상태(2015. 10. 6.자 중앙일보, 변호사 2만명 시대, 3,400명이 논다)여서 사회경험자나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버리고 상당한 기회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로스쿨에 진학할 이유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로스쿨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선발하지 않는 추세라 더욱 이들의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4.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들에 로스쿨 인가를 해주고, 많

은 정원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보다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이를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 부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나. 지방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출신들이다. 나이가 많거나 다른 이유로 서울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상당수의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출신들이 지방 로스쿨에 진학하였다가 3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는 다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변호사 비율보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변호사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상대적으로 더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해 주지 않거나 적은 인원을 배정하면서 지방 로스쿨에 인가를 해 주고, 많은 인원을 배정해 준 것은 지방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그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라는 취지일 것인데, 그 취지는 무색해졌고, 오히려 서울 소재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잠시 머물러 떠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 로스쿨을 졸업한 서울 유명 대학 출신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지방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고, 출신 대학만 기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방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일정기간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지방 로스쿨 측에서는 지방에는 변호사로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반대한 적도 있다.

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 특정대학,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 변호사 비율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

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인원을 배정하였고, 선발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2012~2015년) 임용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 검사 10명 중 7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대’의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이들 대학의 쏠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어(2015. 5. 8.자 법률저널, 로스쿨 검사, 사시보다 ‘SKY대’ 쏠림 심화 참고) 로스쿨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낭인의 문제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경쟁이 심해 고시 낭인을 양산하게 되므로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하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험이든지 응시자 보다 합격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다르지 않다.

로스쿨 입시에서부터 더 좋은 로스쿨을 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변호사 시험은 응시자격이 5회로 제한되는데 내년부터 5회의 응시자격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5년간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앞으로 누적 불합격자 수는 늘어나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어 앞으로 이러한 변호사시험 낭인들은 상당수 배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낭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등장한 로스쿨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6. 높아진 진입장벽

가. 로스쿨을 학부 과정인 아닌 대학원과정에 설치함으로써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고, 학부 과정에 비해 3-4배 높아진 학비는 서민들에게는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사법시험 하에서는 없던 새로운 진입장벽

이 생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는데, 학비가 1년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에 육박하는 로스쿨을 통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로스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대하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로스쿨 관련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전형제도와 장학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들도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고, 장학금을 못 받으면 저리로 대출을 받아 로스쿨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회 불균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1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학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3년 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지방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장학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마련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 빚내서 집사면 된다는 주장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대학 4년간 대출을 받아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출받아서 학비를 마련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 장학금 지급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2010년 43.5%, 2011년 41.7%, 2012년, 2013년 각 39.4%, 2014년 36.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떤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읍소하는 글을 지역신문에 기고하기도 하고, 어떤 로스쿨에서는 장학금 지급 비율을 낮추었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각 로스쿨은 학생들이 내는 학비로는 교수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공립 대학은 국고보조로, 사립학교는 다른 학과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낸 학비를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그리고 해마다 로스쿨 학비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인상되고 있어[국공립대의 경우 2012년 인문사회계열 학부과정 등록금은 4.5% 낮아진 반면, 로스쿨 한 학기 등록금은 2009년 1,005만 원에서 2012년 1,053만 원으로 48만 원(4.8%) 올랐고, 사립대 역시 인문사회계열 학부과정이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0.5% 인상되는데 그친 반면, 로스쿨은 8.7% 인상되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제64쪽 참고], 과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한다면 무슨 돈으로 유지할지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학금을 주니 경제적 약자도 문제없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다는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7. 나는 원래 변호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

로스쿨 제도의 성과 중 하나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가 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변호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원래 자신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기만 한 것일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합격률이 너무 낮고, 합격할 수 있을지, 언제 합격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쉽고 안정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사법시험에 비해 더 쉽고 확실하고 안정적인 확률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은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변호사가 쉽게 되는 제도가 국민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질 낮은 변호사를 다량 배출함으

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만 높아질 수도 있다. 로스쿨 도입 후 재학생들은 아직도 무변촌이 많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달라고 시위까지 한 일이 있지만, 그 후 6,000명가량의 변호사가 배출되었는데, 그 전에 비해 무변촌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실제로 무변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더 쉽고, 많이 배출되었지만, 과연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로스쿨에 대해 2009년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배병일 로스쿨협의회 이사에게 “저는 그래서 이게 마치 돈 더 주고 자격증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8.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이 되어야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발인원이 많더라도 모두 합격시키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선발인원이 적더라도 불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리라.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5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대에 입학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의사고시를 통과하는 것처럼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이 대부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면 응시자들이 지금처럼 1,500명이라도 합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근 신사법시험(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제1회 변호사시험 채점을 맡은 실무가들의 채점평을 보면 실제로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면 합격인원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들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고, 로스쿨 교수들은 아무 대답 없이 대다수의 답안지에 최고점을 줬으며 법무부에서조차 이미 1,500명을 뽑기로 하였으니 협조해 달라, 이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 4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채점하라, 외부에 절대 이들의 답안수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한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제122쪽 참고).

9. 입학 및 취업 과정의 불투명성과 음서제 문제

가. 로스쿨을 학부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 두면서 입학의 공정성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입시 과정과 대학원 입시 과정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입학은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으로 인해 결정된다.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면접, 자기소개서 등의 비중이 30-40%로 높아 결국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그만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시 학원인 메가로스쿨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수기들의 내용을 보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주관적인 요소들이 로스쿨 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저보다 정량적으로 훨씬 뛰어난 친구들이 우수수 탈락하는 것을 보며 자소서, 면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성적인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자기소개서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량이 좋아도 정성에서 성의가 없다면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자소서와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학점 등 정량적인 수치가 경쟁자들에 비해 절대로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면접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높은 LEET, 토익, 학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LEET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쉽게 출제되어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에 자기소개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최근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입학하고, 아버지 수업을 듣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 3년 사이에 소속 교수의 자녀 3명이 입학하였고,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의원이 부산대에 당시 면접에 들어간 교수 명단과 해당 학생들의 전형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산대 로스쿨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인 해당 교수 2명이 자녀 3명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제외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2015. 10. 6.자 머니투데이, 현대판 음서제? 부산대 로스쿨 교수 자녀 ‘부산대 로스쿨’ 입학 도마, [국감현장]부산대 로스쿨 A·B교수의 자녀 3명 부산대 로스쿨 특혜입학 의혹 참고).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처럼 성적으로 획일적인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입학 전형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왜 떨어졌는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라는 비난이 일고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취업 과정에서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고,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유력인사들의 자제가 다수 차지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게 되었다. 하지만, 점수만 공개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로스쿨 졸업 후 채용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면 객관적인 평가 자료인 변호사 시험 성적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대형로펌, 검찰, 법원의 현재와 같은 채용 방식으로는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대형로펌은 보통 로스쿨 2학년생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을 확정하고, 검사나 재판연구원 임용시험도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이루어져서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는 소극요건으로만 작용하고, 변호사 시험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로펌, 검찰, 법원이 주도적으로 채용절차를 개선, 변경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스쿨이 선발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취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로스쿨 교육기간 3년 동안 충실히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채

용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3년 교육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기도 전에 채용을 확정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연장선장에서 음서제 논란이 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 로스쿨 입학 과정이나 채용 과정에 있어 다양하게 지원자를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일반의 정서상으로는 입학이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양성과 잘 조화할 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음서제 시비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만 맡겨두어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10. 결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로스쿨이 사법시험 제도하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7년 동안 별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완벽한 제도는 없다. 다만,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아무도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그건 로스쿨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식의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제도를 악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사법시험이 존치 된다고 해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되느냐고 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다. 하지만 지금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법시험이 병행·실시되고 있어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나면 로스쿨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로스쿨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존치될 필요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한 것은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액의 학비를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더라도 변호사 될 수 있는 길을, 나아가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다. 또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의견 제시는 변호사 단체로서 하여야 할 당연한 임무라 할 것이다.

로스쿨의 원래의 취지대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면,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 두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가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법학전문대학 성과와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



(토론)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취약 및 소외계층의 로스쿨 진입과 관련된 토론편



(토론) 최명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취약 및 소외계층의 로스쿨 진입과 관련된 토론문

최 명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국의 법체계의 근간을 모색하는 이렇게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회복지학자의 의견을 발표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법률지식에는 문외한이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논쟁에 감히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다루는 사회복지실천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인 분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몇 가지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에 언급하는 몇 가지 현대 사회의 특징들은 아마 로스쿨에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일정 정도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의 규범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I. 논의의 전제

저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로스쿨 진입은 우리 사회에서 법률가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 즉 이론적 지식과 실무 역량 그리고 윤리적 태도를 갖춘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이라는 신분이 법적 체계나 안정성을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사회변화와 문화적 에토스를 볼 때 이들 계층이 전문직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I. 사회적 부정의 창출 구조의 다양화

먼저 사회적 부정의의 창출 구조가 다원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화, 다원화, 다양화되다 보니 우리들의 삶에 갈등과 고통을 야기하는 사회적 구조, 즉 법률적 용어로는 아마 불의를 야기하는 사회적 기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경제, 사회, 문화, 지역, 성, 인종, 현실 공간, 사이버 공간 등 인간 삶을 규정하는 거의 모든 시공간에 걸쳐 다원화되고 복합적인 갈등과 불의가 구조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원화된 불의의 창출구조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지식과 실천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III. 윤리적 정서의 변화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윤리적, 혹은 규범적 논의의 중심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사회에서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수행되는 논리적 결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의 사회흐름은 이해갈등 당사자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이로부터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체험적 고통이나 고민이 중요한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철학적 용어로는 이를 자율성의 윤리에서 ‘진정성의 윤리’로 사회규범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률계에서는 이를 법적 정의의 체감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통철학의 개념으로서 올바른 삶도 중요하지만 좋은 삶, 또는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생생한 분노와 모멸감이 도덕적 판단의 중요한 토대이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체계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IV. 유동하는 사회에서의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인간이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 자유와 절대적 자유, 혹은 법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로 구분하여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통적인 사회적 연대 즉 가족, 지역사회, 시민사회, 국가의 고

체성과 연대적 성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 즉 법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이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들에게 실제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받으며 긍정적 자기의식을 통해 이러한 실제적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나 기회의 편차가 계층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V. 법률전문가의 다양화

사실 지역사회의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법조인이 법률문제의 당사자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편적인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판사와는 달리 특히 자신의 클라이언트의 고통과 고민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맥락과 체험적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이 높다면 훨씬 유능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전문가의 특성도 흔히 입법가에서 상담가로 변화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의 역할 역시 입법가에서 상담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질 중에서도 말하기보다는 듣기와 이해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말을 하더라도 보편적인 언어 뿐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문제, 특정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어(local language) 사용 능력이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VI. 제안말씀

이상의 논리가 사회복지실천철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의 법률전문직 진입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에서 어떠한 계층이 과연 소외계층인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고 많은 경우 정치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 입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은 상당히 유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사회복지계나 사회철학계의 중요한 논의점이 될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원선발 과정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대변하는 방법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